

규 칙

제 1 장 목 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40조에 의거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11.12 개정]

제 2 장 입 회

제2조(입회 신청 절차)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1인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원서 및 입회금을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9.03.13, 2016.06.10, 2021.11.12 개정]

제3조(회원별 자격 및 승격 등) ①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사항은 회원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2021.11.12 개정]

1. 준회원 : 준회원은 전기(학과 또는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원 전일제 석사과정 또는 대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2. 정회원 : 정회원은 전기(학과 또는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4년제 대학을 이수한 자 또는 전문대학을 이수한 후 2년제는 2년, 3년제는 1년 이상인 자 또는 고교 졸업 후 실무 경력 4년 이상인 자 또는 기타 전기공학 분야에서 앞의 사항과 동등 이상의 이력이 있는 자로 한다.
 3. 특별회원 : 특별회원은 학회 사업취지를 찬동하는 법인 및 단체로 한다. [2021.11.12 개정]
 4. 명예회원 : 명예회원은 비회원으로 공공 및 사회복지 분야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로 회원관리위원회 규정에 의거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회원으로 한다. [2009.03.13 개정]
 5. 제휴회원 : 제휴회원은 업무 협약 단체장 또는 지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고, 학술대회 참여, 기술정보 제공 및 검색, 제휴 업체 혜택이 부여 되는 것으로 한다. [2009.09.11 신설]
- ② 정회원으로서의 승격은 준회원이 입회 시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시점에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 ③ 정회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회원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원로 회원, 시니어 회원, 영펠로우 회원과 펠로우 회원 등급을 부여한다. [2017.11.10, 2019.07.11, 2021.11.12 개정]
- ④ 정회원의 승격 및 등급 부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준회원의 정회원 승격은 규칙에서 정한다. [2019.07.11 개정]
 2. 시니어 회원 등급은 제출된 신청서와 추천서에 대한 회원관리위원회의 시니어 회원 심의분과의 심의를 통하여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영펠로우와 펠로우 회원으로서의 등급 부여는 회원관리위원회 규정에서 제시한 해당 회원 승격 신청서와 추천서를 토대로, 해당 부문 이사회 심의를 거친 후, 회원관리위원회의 각 해당 회원 심의 분과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 후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2019.07.11 개정]

제 3 장 회 비

제4조(입회금 및 회비의 종류) ① 준회원, 정회원, 제휴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2010.02.05 개정]

② 논문지, 영문논문지 등 기타 간행물의 구독을 원할 경우에는 모든 회원은 논문지 구독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단, 논문지 구독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2003.11.07 개정]

③ 평의원은 전①항의 연회비 외에 평의원 회비를 납부(당연직 평의원은 면제)하여야 한다. 단, 평의원 회비 미납 시 의결권 및 선거권을 제한한다. [2019.11.08 개정]

- ④ 전 ①~③항의 회비는 매년 3월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2019.11.08 개정]
- ⑤ 정회원 중에서 15년분 연회비를 일시납부(가입 후 2년 내 2회까지 분납 허용)할 시는 종신회비로 인정하여 회비를 면제한다. [2010.02.05 신설, 2011.11.11, 2021.11.12 개정]
- ⑥ 정회원으로써 5년분, 3년분, 2년분 연회비를 일시납부하는 경우는 각각 7년, 5년, 3년 정회원 회비를 납입한 것으로 인정한다. [2010.02.05 신설, 2021.11.12 개정]
- ⑦ 특별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정지 및 제명 처분)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써 회비를 당해 년의 납부 기한 내에 미납할 때에는 학회지의 배포를 정지하며,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격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2003.11.07, 2021.11.12 개정]

제6조(기납금품의 불반환) 회원은 기납한 입회금, 회비 및 기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4 장 회 무

제7조(이사의 직무 분장 및 정원)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의 직무분장은 다음과 같으며, 회장은 직무별로 담당이사 약간 명을 임명할 수 있다.

1. 이사의 직무별 명칭은 다음과 같다.

- 가. 총무이사
- 나. 재무이사
- 다. 기획정책이사 [2003.11.07 개정]
- 라. 편집이사
- 마. 학술이사
- 바. 회원교육이사 [2001.09.07 신설]
- 사. 사업이사 [2003.11.07, 2021.11.12 개정]
- 아. 산학협동이사 [2021.11.12 신설]
- 자. 국제이사
- 차. 소통이사 [2003.11.07. 홍보이사 신설 / 2023.11.10. 소통이사로 개정]
- 카. 기술이사 [2023.11.10. 신설]

2. 이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3. 이사의 직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 가. 총무이사 : 인사, 문서, 섭외, 일반 서무, 정관, 규칙 및 규정 [2003.11.07, 2021.11.12 개정]
- 나. 재무이사 : 예산, 결산, 금전 출납, 재산 관리 및 기타 회계
- 다. 기획정책이사 : 각종 기획 및 장기발전 방안 수립, 기술정책, 부문회 업무조정 [2003.11.07 개정]
- 라. 편집이사 : 회지, 논문지의 편집과 발간, 광고기획
- 마. 학술이사 : 학술대회, 강연회, 국내학술연구 단체와의 협력
- 바. 회원교육이사 : 회원, 지회관리 및 교육 [2001.09.07 신설, 2004.04.09 개정 “지부 명칭변경”]
- 사. 사업이사 : 연구 및 조사, 표준 및 규격 제정, 교재 편찬, 산학협력 [2003.11.07, 2021.11.12 개정]
- 아. 산학협동이사 : 산학연 친선교류, 산학연 세미나 및 연구발표, 산학연 공동연구 기획 및 추진, 산업체 시찰 [2021.11.12 신설]
- 자. 국제이사 : 외국 학회 및 국제기구 간의 교류 협력, 국제학술회의 [2003.11.07 개정]
- 차. 소통이사 : 대내외 소통 및 홍보, 정보화 [2003.11.07. 홍보이사 신설 / 2023.11.10. 소통이사로 개정]
- 카. 기술이사 : 기술활동 [2023.11.10. 신설]

제8조(사무국) 회장은 회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평의원선출

제9조(평의원 및 선출 절차) 평의원의 선출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직선 평의원

1. 이사회에서 직선 평의원 수의 2배수 이내의 평의원 후보자를 선정한다. [2021.11.12 개정]
2. 직선 평의원 투표권자는 투표일 이전 2년의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 한다. 단, 명예회원은 연회비 납부가 면제되었으므로 연회비 납부에 관계없이 투표권을 갖는다. [2007. 9. 14, 2021.11.12 개정]
3. 직선 평의원은 전 제①항 제1호에 의거 이사회에서 선정된 후보자 중 180인 이내를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단, 투표지의 후보자 중 80인 이상 120인 이내를 기표하여 투표하되 120인을 초과하거나 80인 미만으로 기표할 경우는 무효로 처리한다. [2007.09.14, 2013.12.13, 2021.11.12 개정]
4. 전 3호의 투표지를 개표하여 회원 수에 비례하여 지회별 득표순(지회 쿼터제)과 전문대학별 득표순(전문대학 쿼터제), 40대 득표순(40대 쿼터제)으로 먼저 선출하고, 다음에 득표순으로 선출하여 총 180인의 직선 평의원을 선출한다. 단, 지회 쿼터제와 전문대학 쿼터제, 40대 쿼터제에 대한 상세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003.11.07, 2004.04.09 “지부 명칭변경”, 2007.09.14, 2013.12.13, 2021.11.12 개정]

② 간선 평의원

1. 직선 평의원수의 4분의 1 이내에서 선출하되 동일 임기의 회장이 직선 평의원수의 8분의 1 이내에서 학회 발전을 위하여 협력이 요청되는 인사(산업계와 유관기관의 임직원 10인을 포함)를 간선 평의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2007.09.14, 2021.11.12 개정]
2. 각 부문회장은 부문회 별 4명씩을 간선 평의원으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2013.12.13 신설]

③ 당연직 평의원

1. 회장을 역임한 회원과 현 회장, 차기회장은 회장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10년간 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평의원으로 추대한다. [2009.09.11 개정]
2. 지회장은 재임 기간 중 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평의원으로 된다. [2004.04.09 개정 “지부 명칭변경”]
3. 평의원이 없는 관련 단체 임원 각 1명 및 특별회원사 후원금 상위 10개 업체의 임원 각 1명은 소속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평의원으로 된다. [2012.07.18 신설]

제 6 장 부문회, 부회 및 기술위원회

제10조(부문회의 설치) 학회의 전문 분야 간의 연계된 학술활동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분야별 기술위원회로 구성된 부문회를 둔다. [2021.11.12. 개정 / 2023.11.10. 개정]

제11조(부문회) 학회에 다음 6개의 부문회를 둔다. [2021.11.12. 개정, 2023.12.08. 개정]

1. 전력기술 부문회
2. 전기기기 및 에너지변환시스템 부문회
3. 전기물성·응용 부문회
4. 정보 및 제어 부문회 [2005.06.10 개정 “부문회 명칭변경”]
5. 전기설비 부문회 [2010.07.14 개정 “부문회 승격”]
6. 산업전기응용 부문회 [2024.02.16 개정 “부문회 승격”]

제12조(부문회의 임원 정원) 부문회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부문회 회장 1인
2. 부문회 부회장 4인 이내 [2020.02.14 개정]
3. 부문회 이사 40인 이내 [2005.07.20, 2020.02.14 개정]
4. 감사 2인
5. 기술위원회 위원장(삭제) [2023.11.10. 개정 / 2024.02.16. 개정]

제13조(부분회 임원의 임기) 부분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분회 회장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부분회의 임원 선출) 부분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부분회의 회장, 감사는 부분회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2. 부분회의 부회장 및 이사의 선출은 별도 부분회 회장 및 감사 선출 절차 규정에 따른다. [2021.11.12 개정]

제15조(부분회의 회칙 제·개정) 부분회는 학회 정관 및 규칙 취지에 따라 부분회의 회칙을 제정 및 개정하여야 하며, 본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2021.11.12 개정]

제16조(부분회의 사업 및 예·결산보고) 부분회는 학회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신년도 사업계획과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 사업보고 및 결산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본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21.11.12 개정]

제17조(부분회의 설치) 부분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분회 신설과 유지에 관한 규정과 부분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2021.11.12 개정]

제18조(부회의 설치) 부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회 설치규정으로 정한다. [2009.09.11 신설]

제19조(기술위원회의 설치) ① 부분회는 소속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03.11.07. 개정 / 2021.11.12. 개정 / 2023.11.10. 개정]
 ② 기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술위원회 신설, 운영 및 폐지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2021.11.12. 개정 / 2023.11.10. 개정]

제 7 장 위원회, 전문위원회, 교육원 및 KIEE CEO 클럽 [2021.11.12. 개정, 2024.02.16 개정]

제20조(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설치) ① 학회의 회무를 수행 및 전문분야의 연구 활동을 위하여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21.11.12 개정]

②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전문위원회) 설치 규정으로 정한다. [2021.11.12 개정]

제20조의 2(교육원 설치) ① 학회의 교육 강좌 및 민간자격증 운영 등의 활동을 위하여 교육원을 둘 수 있다. [2021.11.12 신설]

②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021.11.12 신설]

제20조의 3(KIEE CEO 클럽 설치) ① 산업계와 학계간 지식을 공유하고 상호 네트워킹을 추진하기 위해 KIEE CEO 클럽을 둘 수 있다. [2024.02.16 신설]

② KIEE CEO 클럽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024.02.16 신설]

제 8 장 특별 또는 협력기구 설치

제21조 학회의 발전과 관련하여 유익성이 인정될 경우 국내외 유관 기관장이나 학술 단체장과의 상호 협약으로 학회 내에 특별 또는 협력기구(이하 “기구”라 함)를 둘 수 있다. [2021.11.12 개정]

1. 기구의 설치 제안은 학회 유관 기관이나 단체, 또는 학회 임원 및 회원이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치 여부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단, 그 효력은 학회의 장과 유관 기관이나 학술 단체장의 명의로 상호 협정을 조인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2021.11.12 개정]
2. 설치 기구는 학회 소속의 단체들과 동일하게 간주되고 협약의 범위 내에서 활동의 제약을 두지 아니한다. 단, 기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2021.11.12 개정]
3. 기구가 규정하지 아니한 활동을 수행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따로 얻어야 한다. 상호 협정에 위배되는 활동을 임의 수행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활동의 제재, 협약의 취소 및 기구 해체를 할 수 있다. 단, 기구 해체 시 모든 재산은 학회의 소유로 하되, 상호협정된 부분의 재산은 예외로 한다. [2021.11.12 개정]

제 9 장 지 회

제22조(지회 설치 요건) ① 지회는 시·도 단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 주도 공업단지 지역 등 특수

지역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여 별도로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2004.04.09 개정 “지부 명칭변경”]

1. 광역시·도 단위 : 정회원 30인 이상 [2003.11.07 개정]
2. 특수 지역 : 정회원 50인 이상
3. 해외 지역 : 정회원 20인 이상

제23조(지회 임원의 정원) ① 지회에는 다음 위원을 둔다. [2003.11.07, 2004.04.09 개정 “지부 명칭변경”]

1. 지회장 1인
2. 부지회장 2인 이내
3. 지회 이사 약간인
4. 지회 감사 2인

② 필요 시 지회 규약에 의한다. [2003.11.07 신설, 2004.04.09 개정 “지부 명칭변경”]

제24조(지회 임원의 임기) ① 지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2004.04.09 개정 “지부 명칭변경”]

② 지회장 유고 시에는 부지회장 또는 지회 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2004.04.09 개정 “지부 명칭변경”]

제25조(지회 임원의 선출) 지회장을 포함한 지회 임원은 지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2004.04.09 개정 “지부 명칭변경”]

제26조(지회 규약의 제정) 지회는 정관 및 이 규칙 취지에 의하여 지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은 본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2004.04.09 개정 “지부 명칭변경”, 2021.11.12 개정]

제27조(경비의 보조) 해당 지회 회원이 학회에 납부하는 당해 연도 회원 회비의 15% 이내에서 지회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단, 2016년 이후부터 가입한 회원인 경우 회원 회비의 30%를 지회 경비로 보조할 수 있다.
[2016.02.19., 2021.11.12., 2024.03.008 개정]

제28조(예산, 결산 보고) 지회는 차기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당해 연도 결산 및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말까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04.04.09 개정 “지부 명칭변경”, 2021.11.12 개정]

제 10 장 사 무 국 [2019.02.15 신설]

제29조(사무국의 설치) 회장은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30조(사무국의 구성) ① 사무국에 상근 직원 중에서 1인의 사무국장과 2인의 팀장을 두며, 각 팀에는 약간 명의 팀원을 둔다.

- ② 1. 사무국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024.02.16 개정]
2. 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024.02.16 개정]

제31조(사무국의 직무) 사무국은 회장을 보좌하며 다음의 학회 지원 사업을 직무로 한다.

1. 학술 지원 사업 : 학회와 부문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국내외 학술대회, 기술위원회 활동 등 [2021.11.12. 개정, 2024.02.16. 개정]
2. 경영 지원 업무 : 총무(총회, 이사회, 평의원회, 학회 기술위원회), 회계, 인사, 회원, 기획업무 등 [2021.11.12. 개정, 2024.02.16. 개정]
3. 기술 보급 업무 : 용역사업, 기술조사 사업, 대내외 교육업무, 표준 및 인증업무, 논문지 발간, 학회지 발간, 정보화 등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021.11.12 개정]

제32조(사무국의 운영 규정) 기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아래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1. 사무국 인사규정
2. 사무국 복무규정
3. 사무국 보수규정

제 11 장 간행물 발간

제33조(간행물 발간) 학회는 회지, 논문지 및 도서를 발간할 수 있다. [2021.11.12 개정]

제34조(회지 배포) 회지는 회원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고 논문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배포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국내외 학회, 공공기관과는 무상으로 배포 또는 상호 교류할 수 있다. 다만, 비회원으로서 회지와 논문지 및 기타 간행물의 구독을 희망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2 장 포상 및 장려

제35조(포상의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전기공학 분야에 관련된 학술 및 기술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2.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2021.11.12 개정]

제36조(포상의 종류) 학회의 포상 또는 학회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002.10.11, 2021.11.12 개정]

1. 공로상
2. 학술상
3. 논문상 [2002.10.11 개정]
4. 기술상 [2002.10.11 개정]
5. 특별상은 후원자 명의의 학술상 또는 기술상
6. 전기인 상 [2004.04.09 신설]
7. 산학협동대상 [2006.11.10 신설]
8. 산학협동상 [2006.11.10 신설]

제37조(포상 규정) 포상에 관한 사항은 포상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연구비 보조) 전기공학 분야의 학술 및 그 응용에 관한 연구를 하는 기술위원회 또는 개인에 대하여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2024.02.16. 개정]

제39조(장학금 지급) 학회에 장학생을 두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21.11.12 개정]

제40조(포상 실시) 학회에서 정하는 포상 및 장려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시행한다. [2021.11.12 개정]

부 칙

제41조(내규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 및 기준 등 내규는 이사회에서 이를 정한다. [2021.11.12 개정]

제42조(시행일자) 이 규칙은 평의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1.11.12 개정]

제43조(경과조치) 1989~1990년도 임기에 한하여 평의원 정족수는 110인으로 하고 증원된 10인의 평의원은 규칙 제5장 제9조 제②항, 제1호에 따라 신임회장단이 선출한다. [2021.11.12 개정]

제44조(경과조치) 중신회원 제도는 2004년 1월 1일부로 폐지한다. [2003.11.07 신설]

제45조(경과조치) 중신회원 제도를 2010년 1월 1일부로 부활한다. [2010.01.08 개정]

- | | |
|--------------------------------------|---------------------------------------|
| 1. 이 규칙은 2001년 9월 7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10. 이 규칙은 2011년 11월 1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 2. 이 규칙은 2003년 11월 7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11. 이 규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 3. 이 규칙은 2004년 4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12. 이 규칙은 2019년 7월 1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 4. 이 규칙은 2005년 6월 10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13. 이 규칙은 2019년 11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 5. 이 규칙은 2005년 7월 20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14. 이 규칙은 2020년 2월 14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 6. 이 규칙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15.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 7. 이 규칙은 2007년 9월 14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16.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 8. 이 규칙은 2008년 12월 5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17. 이 규칙은 2024년 02월 16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 9. 이 규칙은 2010년 1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